

한·미 FTA와 육계산업



김 정 주 교수
건국대학교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육계 산업의 변화와 대책방안

1. 한·미 FTA의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협정 발효 뒤 10년 동안 6.0%(약 80조원) 늘어나고 34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 4월 30일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미 양국 간 교역 증대 등의 효과로 실질 GDP는 즉시 0.3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해질 경우 10년간 80조원(2018년 GDP 추정치의 6.0%)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생산은 6조7,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농업 취업자는 10년간 1만명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7만9,000명)과 서

비스업(26만7,000명)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 전체적으로 34만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협정 발효 뒤 10년 안에 대미 무역흑자가 46억달러 늘어나는 데 힘입어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생겨나는 소비자 후생 수준 증가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오는 2009년부터 발효된다고 볼 때,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차(2013년)에 4,465억원, 10년차(2018년)에 8,958억원, 15년차(2023년)에 1조361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 연평균 축산물 생산 감소액은 닭고기 707억원을 비롯해 쇠고기 1,811억원, 돼지고기 1,526억원, 유제품 504억원 등으로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연간 총생산액을 1조 7,000억원으로 보고 10%만 생산액 감소를 고려한다 해도 1,700억원인데 707억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국책연구기관답게 피해를 줄여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계산업을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 뻔히 보임에도 육계산업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지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육계산업을 포함한 농업을 희생시켜 다른 수

출 주력산업이 성장된다면 당연히 그 희생에 상응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마땅히 무산되어야 하겠으나, 정부 의도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 육계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 한·미 FTA에 따른 양계산업의 대책

1) 퇴출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한·미 FTA가 체결되어 부득이하게 경쟁에서 퇴출될 사육농가가 생길 것이므로 폐업보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알리는 순간부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부문 투융자 119조원 계획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윗돌 빼다 아래에 놓는 식’의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소득보전 직불제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것도 현실화된 직불제가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 현재 육계 계열농가가 연평균 5회전을 실시한다고 보고 미국 닭고기에 10% 정도의 시장을 더 내줄 것을 가정하면 육계 계열농가는 0.5회전의 사육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감소는 소득직불제를 통해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계 친환경 직불제 까지를 고려할 경우 1회전의 사육기회를 추가로 더 놓친다고 보면 연간 1.5회전에 해당되는 소득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단독경영 양계 농가를 위한 기반 조성

한국의 육계산업은 계열화방식에 의한 사육이 90% 정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경영에 의한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율은 작지만 이들의 생업도 중요하다. 따라서 육계단독 경영자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한다. 예컨대, 닭고기 가격이 공정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공판장도 개설해야 하고, 이들의 생산품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소규모 도계장 건립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닭고기 지역브랜드 육성도 가능해 질 것이다.

3) 원산지 표시제 강화

원산지 의무 표시제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 원산지 의무 표시제는 법만 있고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이러한 원산지 표시 의무 시행여부를 어떻게 감시, 감독하느냐가 문제이다. 기껏해야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관련법의

한·미 FTA와 육계산업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농림부 및 농업관련 기관 공무원, 지자체 농업 부서 공무원들에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관련 위반에 대한 현장 처분권한을 부여해 마치고 교통경찰이 위반차량을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벌칙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감시, 감독인원도 확보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닭고기 소비 홍보 강화

육계산업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소비 촉진이 다. 이를 통해 육계생산자는 물론 가공, 유통업자 모두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닭고기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바,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욕구는 매우 까다로워졌을 뿐 아니라 과거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던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상품을 고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건강에 더 많이 집중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품질문제, 특히 위생적인 문제가 육계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육계 의무 자조금의 출범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 자조금제도의 정착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 가장 앞서 시행할 것으로 보인 육계업계가 의무 자조금 제도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육계의 경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량의 90% 정도가 계열화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데 도계장에 들어오는 닭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계열회사에 있음에도 자조금은 사육농가가 부담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미국 같은 농업선진국에서도 육계자조금은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축산 자조금 사업을 막론하고 자조금 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육계

의 경우는 계열업체와 사육 농가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의 수혜 폭이나 자조금 비율을 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육계산업을 위한 대책

1) 육계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육계산업 평화 정착을 위해 농림부가 깊게 개입 필요가 있다. 계열주체와 계열 사육농가간의 분쟁은 노동현장을 방불케 하는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부득이 분쟁이 발생해 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주는 중립적인 제3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재정으로 가칭 육계산업 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일이다. 이는 사육농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계열주체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육계산업 전체를 위한 것이다. 위원은 15명~20명 내외로 하되, 계열농가와 계열주체에서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면 판정에 대한 객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최악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판정이 재판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2) 신선 냉장 닭고기 유통체계 구축

미국산 닭고기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신선냉장육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냉동기술이 발전했다하더라도 미국에서 닭이 도계되어 냉동되고 수송과정을 거쳐 국내에 도착한 후 이를 다시 해동해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닭고기 육질면에서 국내산 신선닭고기에 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구나 냉동육의 해동과정을 제2의 가공으로 보고 철저한 위생조건을 걸면 관세 인하 못지않은 추가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닭고기에 대한 위생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동시에 국내산 닭고기 냉장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어렵게 시작한 닭고기 포장 유통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냉장·탑차 보급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닭고기 및 가공제품의 수출

일본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닭고기 성수기가 우리와 서로 다른 채 연간 500천톤 정도의 닭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현실을 잘만 활용하면 한국 육계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한 중국의 상위 4% 소득수준 부자 소비층(50백만명)을 겨냥한 한국의 가금육을 포함한 우수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역발상차원에서 연

한·미 FTA와 육계산업



양계산업을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 뻔히 보임에도 육계산업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지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육계산업을 포함한 농업을 희생시켜 다른 수출 주력산업이 성장된다면 당연히 그 희생에 상응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닭고기 제품 개발

닭고기 소비 다변화를 위한 닭고기 제품, 특히, 즉시 먹을 수 있는 (Ready-To-Eat) 제품 및 요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닭고기 백숙, 닭볶음탕, 삼계탕 정도의 메뉴를 가지고는 소비를 주도해가는 젊은 소비층의 선택을 얻어내기가 어렵다.

5) 종계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 구축

종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종계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환원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하는 일이라 항변할지 모르나, 아무리 완화가 좋다하지만 위생이나 안전관련 규제는 완화하기 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종계관리를 위한 D/B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양계협회가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 구축사업이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폐쇄조치로 중단위기에 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어떨지 몰라도 종계 D/B 구축사업 및 관리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계의 과잉 및 과소생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육계산업의 골치 덩어리인 백세미 유통을 근절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계종계의 안정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6) 그 밖에 양계관련 수입 기자재에 대한 관세 영세율 적용, 단체급식에 국산농산물(닭고기 포함) 사용시 지자체단계에서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일, 닭고기 지역 브랜드 정착을 위한 지자체 지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